

지옥에서 온 변호사들 (Lawyers From Hell)

계
육
업
계
의
제
조
물
책
임
(PL)
법
대
비

1995

년 10월 16일자 미국의 경제 주간지 포춘 (FORTUNE)지는 위의 제목으로 커버스토리를 싣고 있다. 커버스토리 표지인물의 주인공은 유방화재 제인 실리콘겔을 제조·판매한 다우코닝 (Dow Corning)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 소송을 제기하여 2,500만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텍사스주의 변호사 두 사람. 이들은 다우코닝을 상대로 피부경화, 장기훼손, 면역체계파괴 등의 부작용을 들어 세계적인 화학기업인 다우코닝을 파산 상태로까지 몰고 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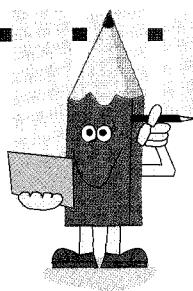
본격적인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내 기업, 특히 중소업체가 태반인 식품업계의 현실은 암울하기 그지 없다. 대부분의 업체가 '강행 규정이 아닌데 뭘…' '우린 ISO인증까지 받았는데 뭘…' '남들 하는 거 봐가면서 우리도 천천히 하지 뭘…' 등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PL법은 분명 강행규정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적 기업들이 과연 ISO,

HACCP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고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론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기업에서는 PL법 시행에 대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차근차근 챙기지 않는다면 반드시 큰 낭패를 볼 것이다.

1. 과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가?

PL소송을 심리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그 제품에 결함이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동종의 사고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이번 사건이 최초인가?'라는 점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분명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예전에도 몇 건이 있었고 기업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 더 이상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에 경험한 제품사고의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품개선 등의 적절한 대응을 취해 놓을 필요가 있다.



2. 동일 업종 타사 제품과 비교해서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가?

제품 결함의 유무가 문제될 때 타사제품의 안전성과의 비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제품이 각각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고, 타사 제품과 동등의 안전성이 있다고 해도 그 자체로 그 제품에 결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타사 제품은 대부분 안전장치가 장착돼 있는데도 이 제품에는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면, 혹은 다른 제품에는 경고라벨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 제품만 그와 같은 표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기업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항상 동일업종 타사 제품의 안전성을 주시하고, 자사 제품의 안전성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체크한 뒤 필요에 따라 제품개선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PL문제의 담당자는 정하였는가?

사내에 PL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사 표준의 개정, 사내 가이드라인의 수립 등 전사적인 PL대책 수립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PL 문제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만은 결정하고 그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 놓아야 한다. 예를 들면, 클레임 대책에 대해서 전화로 접수한 사원이 각각 대응해 가는 것 보다 전임 담당자가 관리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손해전보조치의 검토

PL대책의 최후 방어벽으로 손해전보조치를 확보해야 한다. PL사고가 가끔 기업의 경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의 하나인 것, 아무리 기업이

노력해도 PL사고의 발생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 등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자본적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일수록 적절한 배상자력의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손해전보조치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보험) 외에도 PL단체보험 등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있으므로 어느 것을 이용할 것인가는 각 제도의 비용이나 유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다.

5. 협력업체의 안전성 확보

가정용 보일러를 예로 든다면 이 보일러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은 완성품 제조업자의 단독적인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일러의 안전성은 부품·원재료의 제조, 가공 등에 종사하는 기업, 설치대행 업체, 유지·보수·점검 대행업체 등 관리범위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활동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협력업체에서도 제품의 설계 등에 대해서도 기업에 일임한다는 생각보다 자주적으로 제품안전을 추구해갈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협력업체의 활동 미비로 인한 분쟁발생시 공동대응을 해야 하며, 판결 이후의 책임 분담과 관련하여 관련 협력업체와의 책임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계약서에 관리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업체 평가 내용의 점검, 구상권 행사에 따른 배상이행 능력의 확보 여부에 대한 확인 등 공동의 PL 리스크를 정확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PL코리아(www.plfree.co.kr)

김영수 전문위원(yskim004@lycos.co.kr)